###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공무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### □ 개정사유

- 2015년 임·단협 후속조치로서 인사규정개정(안)의 이사회 부의에 따른 시행내규 개정
- 준공무직(설비, 보안, 주차)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보완

### □ 주요내용

#### ○ 인사규정시행내규

가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 : 58세 → 60세

### ○ 공무직직원관리내규

- 가. 보수지급일 조정 : 매월 5일 → 매월 20일
  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
- 나. 제수당 지급기준 일원화
  - 기술수당 지급 자격종류 및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
  - 위험수당과 병급이 불가한 법정관리수당의 현실화(공무원 병급가능) 및 법정관리자 선임회피 방지를 위한 법정관리수당 조정
  -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: 월 270시간

### □ 행정사항

- 인사규정개정(안) 이사회 의결 후 개정내용에 부합토록 공포·시행
  - 인사규정시행내규
-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 : 공무직직원관리내규

붙임 : 내규개정(안) 1부. 끝.

# 인사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 안 요 지)

1. 개정이유 :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년관련 규정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
  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단 정년 관련 규정 개정
- 나. 부칙신설: 적용시기

#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제안근거
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(정년)
- 2015년 단체협약서(2015.10.28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- 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및 후 공포·시행 단, 관련규정(인사규정) 이사회 의결 후 공포·시행 의뢰

# 인사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###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(정년기준일) 제1항 중 "정년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<u>만58세</u>" 를 "정년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60세"로 한다.

"부칙"을 다음과 같이 "신설"한다.

### <u>부</u>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제 58조 정년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2015년 4월 21일 부터 적용한다.

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<b>제 58 조(정년기준일)</b> ① 규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주민 등록상 <u>만58세</u> 가 되는 해의 12월 31 일로 한다.		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단 정년기준 조정
<u>&lt;신 설&gt;</u>	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 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. 단, 제 58조 정년기준일에 관 한 사항은 2015년 4월21일부터 적용한다.	개정규정 적용시기 명시

# 공무직직원관리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 안 요 지)

### 1. 개정이유 : 공단 정규직 직원의 보수지급일 및 수당지급기준 일원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보수지급일 일원화

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

### 나. 제수당 지급기준 일원화

- 기술수당 지급 자격종류 및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
- 위험수당과 병급이 불가한 법정관리수당의 현실화(공무원 병급가능) 및 법정관리자 선임회피 방지를 위한 법정관리수당 조정
-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: 월 270시간

다. 부칙신설: 적용시기

### 3. 참고사항

### 가. 제안근거
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 차: 이사장 결재 및 후 공포·시행

# 공무직직원관리내규중개정내규(안)

### 공무직직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5조(보수의지급) 본문 중** "보수는 ----<중략>--- 다음달 <u>5일</u>에 지급한다."를 "보수는 ----<중략>--- 다음달 **20일**에 지급한다." 한다.

제16조(임금)의 "별표1"을 조문변동없이 별지의 "별표1"로 한다.

"부칙"을 다음과 같이 "신설"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제 15 조(보수의지급)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- <중략>- 다음 달 <u>5일</u> 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.	│ 범위 안에서 - <숭략>- 다음 날 <b>20일</b>	·
제16조(임금) ① 공무직 직원의 임금은 예산범위내 <u>별표 1</u> 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다.		직군간 차별처우 개 선을 위한 수당지급 기준 일원화, 법정수 당 현실화 및 소정 근로시간 명기
<u>&lt;신 설&gt;</u>	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 행하되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.	개정규정 적용시기 명시

#### ( 혀 행 )

<별표 1> (제16조 관련)

2. 지급기준

구분 종류 및 금액 시기 비고 기술사 매월 50.000 ·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 취득자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사 (1) 30,000 매월 부서의 해당 직종 근무자에게 지급하되 기술자격 수당 증명서류를 급여담당부서에 등록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 지급(중복지급 불가) 산업기사 매월 20.000 ·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압 3.300볼트 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매월 (2)위험수당 50.000 모든 직원 및 유류 보일러 취급 직원에 대하여 예 산 범위 내 지급 • 법정관리자 선임직원 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법정관리수당 매월 (3)30.000 한하여 예산범위내지급 • 부양기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배우자 매월 40.000 내 지급가능 가족수당 • 자녀의 경우 인원수 무관 및 세째이상 자녀는 (5)월8만원(2012년 이후 출생자는 월 3만원) 기타 매월 20.000 ·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보수규정 준용 부양가족 ·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통상임금×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(7)시간외수당 1.5/209×시 대월 (단. II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시간 간 ×1.5×365일÷2(격일)÷12월 야간(22시~익일 06시)시간대에 근무명령을 통상임금× 받아 근무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 지급 (8)야간수당 0.5/209×시 매월 (단, II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4시간 가 ×**0.5×365일** ÷2(격일)÷12월

(단위 : 원)

### (개정)

<별표 1〉(제16조 관련)

2. 지급기준

구분	문 종류 및 금액			<u> </u>	시기	비고
(1)		기	술사, <b>기능장</b>	50,000	매월	·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
	기술 <u>산</u> 수당 <u>긴</u>	산	<u>사,</u> 업기사, 호사, 영양사	30,000	매월	및 면허 취득자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의 해당 직종 근무자에게 지급하되 기술자격 증명서류를 급여담당부서에 등록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 예산
			등사, 호조무사	20,000	매월	법위 내 지급(중복지급 불가)
(2)	(2) 위험수당		50,000	매월	·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압 3,300볼트 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및 유류 보일러 취급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지급	
(3)	법정관리수당		80,000	매월	· 법정관리자 선임직원 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지급	
(5) 가 <del>족</del>	기조스	배우자		40,000	매월	·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지급가능
	기족수당	기타 부양가족	20,000	매월	・ 자녀의 경우 인원수 무관 및 세째이상 자녀는 월8만원(2012년 <u>이전</u> 출생자는 월 3만원) ・ 부양기족의 해당여부는 보수규정 준용	
(7)	(7) 시간외수당		통상임금× 1.5/209× 시간	매월	·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(단, II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시간 ×1.5/270×365일 ÷2(격일)÷12월	
(8)	야간수당		통상임금× 0.5/209× 시간	매월	· 야간(22시~익일 06시)시간대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 지급 (단, II직렬은 시간당 통상임금×4시간 × <u>0.5/270×365일</u> ÷2(격일)÷12월	

(단위 : 원)